

2024년 제26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포상계획 공고

1. 포상개요

디자인산업 발전의 주역 및 디자인 주도 경영 실적이 우수한 선도 기업과 지자체를 찾아 최고의 영예를 수여

2. 포상부문 및 신청자격

부 문		포 상 종 류		신 청 자 격
개 인	디 자 인 공 로	◆ 훈장 및 포장		- 디자인 개발 및 교육·저술 등 디자인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- 디자인 정책방향 제시·홍보 등을 통해 디자인 역량 강화 및 국민 인식 확산에 크게 기여한자 - 한국 디자인의 위상을 널리 알린 자 예) 기업 CEO, 임원, 디자이너, 공무원, 학계인사, 유명인 등 (외국인 포함)
단 체	디 자 인 경 영	(해당 없음)	◆ 대통령 표창 ◆ 국무총리 표창 ◆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	- 디자인 주도로 제조·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고 디자인 경영전략 수립 및 개발 투자, 인재 양성 등 탁월한 경영성과를 거둔 기업·단체 또는 사업 부문
	디 자 인 전 문 회 사		- 디자인 경영전략 및 디자인 경영혁신을 유도하여 디자인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공헌한 디자인전문회사 *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 기업은 가점 적용	
	지 방 자 치 단 체		- 지역 도시 내 디자인 자원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발전 공공혁신 등을 이루어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여준 지방자치단체 (광역자치단체 및 기초 자치단체)	
※ 「훈장은 15년 이상」, 「포장은 10년 이상」, 「대통령·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」, 「장관 표창은 3년 이상」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(표창의 경우, 단체 포함)에게 수여함				

* 우수디자인전문회사: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(산업디자인전문기업에 대한 지원)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호 (산업디자인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)에 근거, '산업디자인전문기업'에 등록된 기업 중 부문별(유망/선도)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중에서 평가를 통해 선정

3. 부문별 규모: 총 36점(예정)

(단위: 점)

부 문			정부포상			장관표창
			훈장·포장	대통령	국무총리	산업통상자원부장관
개인	디자인 공로	16	/	2	2	9
단체	디자인 경영	12		2	3	7
	디자인전문회사	4		1	1	2
	지방자치단체	4		1	1	2
총 36점						

※ 부문별 포상 수량은 변동될 수 있음

4. 신청방법: 신청서 작성 후, **2024. 2. 19.(월) - 5. 13.(월) 17시까지** 방문·우편 접수

- 신청 시 필요한 제출자료 상세 안내는 ‘포상요령’에서 확인
- 접수처: (13496)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

코리아디자인센터 601호 한국디자인진흥원 전시사업실

- ※ 방문 및 우편 접수 모두 신청기한 내 도착분만 유효
- ※ 우편 접수는 담당자에게 전화로 접수 확인 필수 (☎ 031-780-2163)
- ※ 마감일에는 접수가 지연되거나 응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적극 권장

5. 선정방법: 서류 및 발표(면접) 심사



* 단체 부문만 발표 진행. 공로 부문은 2차 발표 대신, 필요시 사실관계 확인 등의 면접 심사 진행

** 심사 결과는 신청서 상의 연락처로 개별 통보되며, 최종 수상자 발표는 국가 포상을 위한 공적심사 절차에 따라 10월에 통보됩니다.

6. 문의처

가. 전화: 031-780-2163

나. 전자우편: kda@kidp.or.kr

※ 보다 자세한 내용은 「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(www.kidp.or.kr) > 문화 확산 및 해외시장 진출 > 대한민국디자인대상」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대한민국디자인대상 포 상 요 령

2024. 2.

산업통상자원부
한국디자인진흥원

2024년 제26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포상요령

1. 포상의 기본방향

가. 창의적 디자인 경영으로 국가디자인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디자인 개발·관리 및 육성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유공자, 우수기업, 지자체에게 정부포상을 실시

나. 포상부문은 디자인 공로, 디자인 경영, 디자인전문회사, 지방자치단체 부문으로 구분하여 포상

부 문		포 상 종 류		신 청 자 격
개 인	디 자 인 공 로	◆ 훈장 및 포장		- 디자인 개발 및 교육·저술 등 디자인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- 디자인 정책방향 제시·홍보 등을 통해 디자인 역량 강화 및 국민 인식 확산에 크게 기여한자 - 한국 디자인의 위상을 널리 알린 자 예) 기업 CEO, 임원, 디자이너, 공무원, 학계인사, 유명인 등 (외국인 포함)
단 체	디 자 인 경 영		◆ 대통령 표창 ◆ 국무총리 표창 ◆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	- 디자인 주도로 제조·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고 디자인 경영전략 수립 및 개발 투자, 인재 양성 등 탁월한 경영성과를 거둔 기업·단체 또는 사업 부문
	디 자 인 전 문 회 사	(해당 없음)		- 디자인 경영전략 및 디자인 경영혁신을 유도하여 디자인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공헌한 디자인전문회사 *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 기업은 가점 적용
	지 방 자 치 단 체			- 지역 도시 내 디자인 자원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발전 공공혁신 등을 이루어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여준 지방자치단체 (광역자치단체 및 기초 자치단체)
※ 「훈장은 15년 이상」, 「포장은 10년 이상」, 「대통령·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」, 「장관 표창은 3년 이상」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(표창의 경우, 단체 포함)에게 수여함				

* 우수디자인전문회사: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(산업디자인전문기업에 대한 지원)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호 (산업디자인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)에 근거, ‘산업디자인전문기업’에 등록된 기업 중 부문별(유망/선도)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중에서 평가를 통해 선정

다. 디자인 경영 및 진흥 활동을 확산해온 기업, 디자인산업 활성화에 공헌한 일반국민 및 현장·실무직원에 대한 포상 기회를 확대

2. 포상 규모: 총 36점 (예정)

(단위: 점)

부 문			정부포상			장관표창
			훈장·포장	대통령	국무총리	산업통상자원부장관
개인	디자인 공로	16	3	2	2	9
단체	디자인 경영	12	/	2	3	7
	디자인전문회사	4		1	1	2
	지방자치단체	4		1	1	2
총 36점						

※ 부문별 포상 수량은 변동될 수 있음

3. 포상 기준

추천기관은 「상훈법」 제4조에서 정한 “중복 수여의 금지”,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서 정한 “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” 와 이 지침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

가. 수공기간

- 1) 정부포상은 「훈장은 15년 이상」, 「포장은 10년 이상」, 「표창은 5년 이상」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또는 단체
- 2) 장관표창은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또는 단체

〈예외〉 추가수공기간 적용

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*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

* 훈장은 7년 이상, 포장은 5년 이상, 표창은 3년 이상의 추가적인 수공기간이 있을 경우 추천될 수 있음(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, 단체표창은 제외)

(단, 이전의 수공기간과 추가 수공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‘나.’항의 수공기간을 충족하여야 함)

나. 재포상 금지 * 기준일: 수여일로부터 추천일

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,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*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

*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(수여일)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, 포장은 5년,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(추천일)될 수 있음(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, 단체표창은 제외)

※ 다만, 퇴직포상(받을 경우만 해당)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

다. 포상 제한

- 1)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
※ 다만,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 미적용
- 2)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- 3)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- 4) 훈·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
- 5) 표창(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)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
- 6) 퇴직포상을 받을 시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,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 시 같은 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·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

라. 포상기준 예외

- 1) 「상훈법시행령」 제17조2의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
- 2)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
- 3) 기타 국가·사회 발전에 탁월한 공적*이 있는 자로서, 추천기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포상기준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자
* 인지도가 높은 대규모 국제대회(경연) 우승, 세계 최고권위의 상 수상, 국내 또는 세계 최초·최고의 업적 달성 등

마. 포상후보(추천) 제외¹⁾

- 1)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(기관)
- 2) 형사처분
 - 가)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나)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다)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라)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마)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1) 「정부포상 업무지침」에 따라, 해당자는 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음(포상 불가)

- 바)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사) 포상 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- 아) 포상 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- ※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
 - ※ 「민중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중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부마민중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민중화운동 관련자가 민중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
- 3) 「상훈법」 제8조 및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
- ※ 단,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
 - ※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
- 4)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단체 및 기관)과 그 임원
- 가)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10조 및 같은 법 「시행규칙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
- 나) ‘임원’ 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- ※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,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
 - 「사업장 등기부등본」, 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」(<http://dart.fss.or.kr>, 회사별검색> 사업보고서>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)을 통해 확인
 - ※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 - ※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- 다) 다만,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,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- 5)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 포함) 및 그 임원
- 가)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- ※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- 나)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- 다) 다만, 상기 가), 나)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

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
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- 6)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
 - 가)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 - 나)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3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

* 포상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- 7) 심사 및 검증 후 포상후보자 추천일 당시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
 - ※ 국제·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(<https://www.share.go.kr>)의 e하나로민원(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)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
- 8) 사회적 물의 등 유발: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- 9) 기타 「정부포상 업무지침」 과 「장관표창 업무지침」에 따른 결격 사유자는 추천을 제한
 - ※ 정부포상 수여 이후 위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을 취소할 수 있음
 - ※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

바. 포상 대상

- 1) **일반국민 포상**: 디자인산업 분야에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
- 2) **외국인 포상**: 우리나라 국익증진 및 국가 디자인산업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
- 3) **단체 표창**: 디자인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국가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또는 단체

4. 신청 방법

가. 신청서 작성 후, **2024. 2. 19.(월) - 5. 13.(월) 17시까지** 방문 또는 우편 접수

- 접수처: (13496)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

코리아디자인센터 601호 한국디자인진흥원 전시사업실

※ 방문 및 우편 접수 모두 신청기한 내 도착분만 유효

※ 우편 접수는 담당자에게 전화로 접수 확인 필수 (☎ 031-780-2163)

※ 마감일에는 접수가 지연되거나 응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적극 권장

나. 제출자료

부 문		정부포상			장관표창
		훈장·포장	대통령	국무총리	산업통상자원부장관
개인	디자인 공로	1. 신청서(공적조서)			
		2. 공적조서 설명서 및 증빙서류(학력, 수상, 경력증명서 등)			
		3-1.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		3-2.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	
		4. (해당자만)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			
		5. ▲ 모든 제출서류가 저장된 USB 1개			
단체	디자인 경영 · 디자인전문회사	1. 신청서(공적조서)			
		2. 공적조서(업체 현황) 설명서 및 증빙서류			
		3. 산업재해율 확인서			
		4-1.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		4-2.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	
		5. ▲ 모든 제출서류가 저장된 USB 1개			
	지방자치단체	1. 신청서(공적조서)			
		2. 공적조서(지자체 현황) 설명서 및 증빙서류			
		3-1.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		3-2.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	
		4. ▲ 모든 제출서류가 저장된 USB 1개			
1. 제출서류 서식은 「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(www.kidp.or.kr) > 문화 확산 및 해외시장 진출 > 대한민국디자인대상」 공지사항에서 배포되는 2024년도 부문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2. 모든 서류는 공식 배포 서식 에 작성하여, 원본 제출 . 단, 신청서(공적조서)와 공적조서 설명서는 원본(스캔본) 외 한글파일로도 제출 필수 3. 제출된 서류 원본 1부와 USB 저장 파일 내용은 동일해야 하며, 심사는 원본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. USB의 폴더별 정리 방법은 부문별 신청서식 내 작성요령 참조 4. 글자체는 서식에 별도 지정되지 않은 경우, 휴먼명조 또는 중고딕 10포인트로 작성 5. 접수기간 외에 제출된 자료(증빙 포함)는 심사에서 제외					

※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(단체)는 포상이 제한됨에 따라, **국세·관세·지방세 모두 완납이 증빙되어야 하고, 이에 따른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**

다. 신청료: “없음”

5. 선정 방법

가. 1차 서류 심사 후, 통과자 대상 2차 발표(면접) 심사

공 모	1차 심사	2차 심사	공개 검증	시 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업 공고 ▪ 국민추천***, 발굴추진단 운영 ▪ 후보자 신청 접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서류 심사 진행 ▪ 6월 중 2차 심사 대상자 개별 통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1차 통과자 대상 발표·면접 심사 진행*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대국민공개검증 ▪ 포상 공적심사 ▪ 9월 중 최종 수상자 발표**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디자인코리아 시상식 개최 (예정)
3-5월	6-7월	7월	8-10월	11. 13(수), 코엑스

* 단체 부문만 발표 진행. 공로 부문은 2차 발표 대신, 필요시 사실관계 확인 등의 면접 심사 진행

** 심사 결과는 신청서 상의 연락처로 개별 통보되며, 최종 수상자 발표는 국가 포상을 위한 공적심사 절차에 따라 10월에 통보됩니다.

<대한민국디자인대상 국민추천***>

- 도입배경: 우리 주변의 숨은 공로자에 대한 포상 기회 제공
- 추천자격: 개인·단체·지자체·공공기관 등 누구나 추천 가능하나 자기추천 불가
- 추천일정: 2024년 5월 3일(금) 17시까지
- 추천방법: [별지 서식] 후보자 추천서 작성 후 전자우편(kda@kidp.or.kr)으로 제출
- ※ 주최 측은 국민추천을 받은 자에게 연락을 취하여, 유공포상 지원 여부 확인 후 공적조서 등 일반 신청인과 같은 제출·심사 절차를 거침 (5월 24일(금) 17시까지 자료 제출)
- ※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는 범죄경력 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가 이용될 수 있으며,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을 사전에 동의 받아야 함

나. 디자인 관련 학계, 업계, 단체,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*의 추천을 거쳐, 산업통상자원부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최종 선정

* 심사 기준은 「[참고] 디자인산업 발전 유공자 정부포상 및 표창 심사지표(안)」에서 확인

다. 추천된 훈·포장 수상 후보자에게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한 추천 제한 사유가 발생하여 후보자 공백이 발생할 경우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후보자를 추가 선정할 수 있음

6. 문의처

가. 전화: 031-780-2163

나. 전자우편: kda@kidp.or.kr

※ 보다 자세한 내용은 「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(www.kidp.or.kr) > 문화 확산 및 해외시장 진출 > 대한민국디자인대상」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디자인산업 발전 유공자 정부포상 및 표창 심사지표(안)

1. 디자인 공로 부문

지표명	지표의 정의	가중치	측정방법												
공통 지표 (40)	국가발전 기여도	10	비계량) • 심사자의 점수 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												
	국민생활 향상도	10	상 등												
	고 객 만족도	10	상 등												
	창조적 기여도	10	상 등												
특성 지표 (60)	공적기간	10	계량) 공적기간에 따른 구간별 점수 부여 <table border="1" style="font-size: small;"> <tr> <td>3년 미만</td> <td>3~5</td> <td>5~10</td> <td>10~15</td> <td>15~20</td> <td>20년 이상</td> </tr> <tr> <td>1점</td> <td>2점</td> <td>4점</td> <td>6점</td> <td>8점</td> <td>10점</td> </tr> </table>	3년 미만	3~5	5~10	10~15	15~20	20년 이상	1점	2점	4점	6점	8점	10점
	3년 미만	3~5	5~10	10~15	15~20	20년 이상									
	1점	2점	4점	6점	8점	10점									
	업적도	디자인 관련 분야의 실적 정도 및 업적 수준 (예: 디자인 개발·홍보 등 산업 육성 및 연구·저술 등 진흥 활동, 국제대회 입상, 사회공헌 등)	5	계량) 수상 실적 (최대 5점) • GD 건당 1점 • IDEA, redden, iF: 건당 0.5점											
15			비계량) • 심사자의 점수 부여 (0~15)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												
기여도	디자인 분야 발전에 기여한 정도 (예: 디자인 정책 수립·제도 개선, 유관기관과 협력, 특허, 관련 행사 참여 등)	20	비계량) • 심사자의 점수 부여 (0~20) 0 2 4 6 8 10 12 14 16 18 20 												
인지도 · 평판도	공적에 대한 대중의 인지 정도, 관련 종사자에 의한 평판 및 지지도	10	비계량) • 심사자의 점수 부여 (0~10) 0 1 2 3 4 5 6 7 8 9 10 												
합 계		100													

2. 디자인 경영 부문

지표명	지표의 정의	가중치	측정방법												
공통 지표 (40)	국가발전 기여도	10	비계량) • 심사자의 점수 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												
	국민생활 향상도	10	상 등												
	고 객 만족도	10	상 등												
	창조적 기여도	10	상 등												
특성 지표 (60)	공적기간	10	계량) 공적기간에 따른 구간별 점수 부여 <table border="1"> <tr> <td>3년 미만</td> <td>3~5</td> <td>5~10</td> <td>10~15</td> <td>15~20</td> <td>20년 이상</td> </tr> <tr> <td>1점</td> <td>2점</td> <td>4점</td> <td>6점</td> <td>8점</td> <td>10점</td> </tr> </table>	3년 미만	3~5	5~10	10~15	15~20	20년 이상	1점	2점	4점	6점	8점	10점
	3년 미만	3~5	5~10	10~15	15~20	20년 이상									
	1점	2점	4점	6점	8점	10점									
	업적도	디자인 관련 분야의 실적 정도 및 업적 수준 (예: 디자인 개발·실적(프로젝트 추진 및 투자액 등), 시장 경쟁력 가치, 성장성, 국제대회 입상, 사회공헌 등)	5	계량) 수상 실적 (최대 5점) • GD 건당 1점 • IDEA, redden, iF: 건당 0.5점											
			15	비계량) • 심사자의 점수 부여 (0~15)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											
기여도	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정도	10	계량) 디자인 인력 신규 채용 비율 • 디자인 인력의 (신규 채용 ÷ 전체) <table border="1"> <tr> <td>비율 (%)</td> <td>1 미만</td> <td>1~15</td> <td>15~30</td> <td>30~45</td> <td>45 이상</td> </tr> <tr> <td>점수</td> <td>2점</td> <td>4점</td> <td>6점</td> <td>8점</td> <td>10점</td> </tr> </table>	비율 (%)	1 미만	1~15	15~30	30~45	45 이상	점수	2점	4점	6점	8점	10점
	비율 (%)	1 미만	1~15	15~30	30~45	45 이상									
점수	2점	4점	6점	8점	10점										
인지도 · 평판도	디자인 분야 발전에 기여한 정도 (예: 디자인 활용, 보호, 관리체계, 특허, 관련 행사 참여 등)	10	비계량) • 심사자의 점수 부여 (0~10) 0 1 2 3 4 5 6 7 8 9 10 												
	공적에 대한 대중의 인지 정도, 기업(단체)과 경영자의 디자인경영 비전·전략 확립 정도와 관련 종사자에 의한 평판 및 지지도	10	비계량) • 심사자의 점수 부여 (0~10) 0 1 2 3 4 5 6 7 8 9 10 												
합 계		100													

3. 디자인전문회사 부문

지표명	지표의 정의	가중치	측정방법												
공통 지표 (40)	국가발전 기여도	10	비계량) • 심사자의 점수 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												
	국민생활 향상도	10	상 등												
	고 객 만족도	10	상 등												
	창조적 기여도	10	상 등												
특성 지표 (60)	공적기간	10	계량) 공적기간에 따른 구간별 점수 부여 <table border="1"> <tr> <td>3년 미만</td> <td>3~5</td> <td>5~10</td> <td>10~15</td> <td>15~20</td> <td>20년 이상</td> </tr> <tr> <td>1점</td> <td>2점</td> <td>4점</td> <td>6점</td> <td>8점</td> <td>10점</td> </tr> </table>	3년 미만	3~5	5~10	10~15	15~20	20년 이상	1점	2점	4점	6점	8점	10점
	3년 미만	3~5	5~10	10~15	15~20	20년 이상									
	1점	2점	4점	6점	8점	10점									
	업적도	디자인 관련 분야의 실적 정도 및 업적 수준 (예: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, 디자인 개발·실적(프로젝트 추진 및 투자액 등), 시장 경쟁력 가치, 성장성, 국제 대회 입상, 사회공헌 등)	5	계량) 수상 실적 및 우수디자인전문회사선정 (최대 5점) • GD 건당 1점 • IDEA, redden, iF: 건당 0.5점 • 우수디자인전문회사선정 1점											
			15	비계량) • 심사자의 점수 부여 (0~15)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											
기여도	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정도	10	계량) 디자인 인력 신규 채용 비율 • 디자인 인력의 (신규 채용 ÷ 전체) <table border="1"> <tr> <td>비율 (%)</td> <td>1 미만</td> <td>1~15</td> <td>15~30</td> <td>30~45</td> <td>45 이상</td> </tr> <tr> <td>점수</td> <td>2점</td> <td>4점</td> <td>6점</td> <td>8점</td> <td>10점</td> </tr> </table>	비율 (%)	1 미만	1~15	15~30	30~45	45 이상	점수	2점	4점	6점	8점	10점
	비율 (%)	1 미만	1~15	15~30	30~45	45 이상									
점수	2점	4점	6점	8점	10점										
인지도 · 평판도	디자인 분야 발전에 기여한 정도 (예: 디자인 활용, 보호, 관리체계, 특허, 관련 행사 참여 등)	10	비계량) • 심사자의 점수 부여 (0~10) 0 1 2 3 4 5 6 7 8 9 10 												
	공적에 대한 대중의 인지 정도, 기업(단체)과 경영자의 디자인경영 비전·전략 확립 정도와 관련 종사자에 의한 평판 및 지지도	10	비계량) • 심사자의 점수 부여 (0~10) 0 1 2 3 4 5 6 7 8 9 10 												
합 계		100													

4. 지방자치단체 부문

지표명		지표의 정의	가중치	측정방법												
공통 지표 (40)	국가발전 기여도	심사 대상자(개인, 집단)의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	10	비계량) • 심사자의 점수 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												
	국민생활 향상도	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 (삶의 질)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	10	상 등												
	고 객 만족도	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	10	상 등												
	창조적 기여도	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, 사회 관행, 행정관례,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	10	상 등												
특성 지표 (60)	공적기간	디자인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연수 (예: 디자인 관련 분야 재직기간, 기업경영 연수 등)	10	계량) 공적기간에 따른 구간별 점수 부여 <table border="1"> <tr> <td>3년 미만</td> <td>3~5</td> <td>5~10</td> <td>10~15</td> <td>15~20</td> <td>20년 이상</td> </tr> <tr> <td>1점</td> <td>2점</td> <td>4점</td> <td>6점</td> <td>8점</td> <td>10점</td> </tr> </table>	3년 미만	3~5	5~10	10~15	15~20	20년 이상	1점	2점	4점	6점	8점	10점
	3년 미만	3~5	5~10	10~15	15~20	20년 이상										
	1점	2점	4점	6점	8점	10점										
	업적도	디자인 관련 분야의 실적 정도 및 업적 수준 (예: 디자인 개발·실적(프로젝트 추진 및 투자액 등), 도시환경 개선 등 디자인 도입을 통한 도시민의 만족도, 경쟁력 가치, 성장성, 국제대회 입상, 사회공헌 등)	5	계량) 수상 실적 (최대 5점) • GD 건당 1점 • IDEA, redden, iF: 건당 0.5점												
			15	비계량) • 심사자의 점수 부여 (0~15)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												
기여도	디자인 분야 발전에 기여한 정도 (예: 디자인 활용, 보호, 관리체계, 지원 실적 및 제도, 특허, 관련 행사 참여 등)	20	비계량) • 심사자의 점수 부여 (0~20) 0 1 2 3 4 5 6 7 8 9 10 													
인지도 · 평판도	공적에 대한 대중의 인지 정도, 기업(단체)과 경영자의 디자인경영 비전·전략 확립 정도와 관련 종사자에 의한 평판 및 지지도	10	비계량) • 심사자의 점수 부여 (0~10) 0 1 2 3 4 5 6 7 8 9 10 													
합 계			100													

※ 공통지표 (비중: 40%, 비계량): 모든 부처, 모든 포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표

※ 특성이표 (비중: 60%, 계량/ 비계량): 부처별·포상부문별 차별성 있게 적용할 지표